이사회 운영 규정

소관부서	이사회사무국
제정	2009.06.30.
1차 개정	2016.05.11.
2차 개정	2022.08.09.
3차 개정	2023.03.24.
4차 개정	2026.03.17.

제1조 [목 적] 이 규정은 주식회사 씨젠(이하 "회사" 라 한다)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[적용범위]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[권 한]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
제4조 [의 무]

① 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,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.

② 이사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회사의 경영정보를 이사회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5조 [이사회 구성]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5-1조 [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]

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
③ 각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
제6조 [이사회 의장]

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, 이사회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.

② 이사회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이 지정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고, 이사회 의장이 지정한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
③ 의장은 이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.

제7조 [소집권자]

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의장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아니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7-1조 [회 의]

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
②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.

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8조 [소집절차]

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, 그 7일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. 단, 통지의 방법은 제한이 없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③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.

제9조 [결의방법]

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다만, 상법에 규정된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 및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,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③ 상법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④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10조 [부의사항]

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상법 및 정관상의 이사회 결의사항
   가. 주주총회의 소집 및 부의 안건(영업보고서, 재무제표 등)의 승인
   나. 대표이사,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, 공동대표의 결정
   다.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, 이전 및 폐지
   라. 신주발행(일반공모 포함) 및 실권주, 단수주의 처리 결정
   마. 사채(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)의 발행 및 관련 사항의 결정
   바. 준비금의 자본전입
   사.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및 이사의 경업 승인과 개입권의 행사
   아.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의 결정
   자.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취소
   차.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주식의 소각
   카. 분기배당의 결정
   타. 자회사의 설립, 폐지 및 증자, 감자 결정 (단, 1년 기간 내 10억원 미만의 증자는 사후 보고)
   파. 기타 법령, 정관에서 정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안건 및 이사회 의장이 회사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안건

2. 주주총회 상정안에 관한 사항.
   가.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도, 임대 경영위임, 및 손익공유계약의 체결·변경·해약
   나. 주식배당 및 자본감소
   다.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을 통한 완전모회사, 완전자회사 설립
   라. 정관의 변경
   마. 이사의 선임·해임 및 보수의 결정
   바.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   사. 주식의 액면미달의 발행
   아.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
   자.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   차.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수립 및 승인
   카.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

3.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
   가. 자기자본 10% 이상의 출자 또는 출자 지분 처분
   나. 자기자본 10% 이상의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(이행보증 및 납세보증 제외)
   다. 자기자본 10% 이상의 채무인수 및 면제
   라. 자기자본 10% 이상의 신규 시설투자 또는 시설증설
   마. 자기자본 10% 이상의 차입
   바.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10% 이상인 자산의 양수, 양도

사. 자산총액 10% 이상의 유형자산 취득 및 처분
아. 자산재평가
자. 자기주식의 취득
차. 공개매수
카. 10억원을 초과하는 기부금 결정

4. 기타
가.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나.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라도, 기업 구조 및 자본거래 관련 등 회사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의 경우 별도의 검토 절차를 거쳐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.

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그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2. 본 규정에서 이사회의 부의사항으로 정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3. 기타 법령 및 정관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사항

③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
2. 대표이사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
3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
4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제11조 [감사위원회 위원의 출석]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12조 [관계인의 출석]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3조 [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감독]
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③ 독립(사외)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

수 있다.

제14조 [의사록]

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 할 수 있다.

제15조 [관계회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]

① 회사가 관계회사 및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② 회사가 관계회사 및 특수관계인과 사이에 통상적인 영업활동과 무관한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승인으로 한다.

제16조 [지원조직]

① 이사회 및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결의사항에 대한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사 내에 이사회의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.

② 지원조직은 이사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안건 발의 부서에 이사회 출석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.